

최종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023. 2. 3.



고용노동부

차 례

I. 총 칙	1
1. 사업 및 지침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용어 정의	2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5. 사업추진체계	5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6
II. 청년공제 가입	7
1. 가입자격	7
2. 청년공제 참여 신청	13
3. 청년공제 가입 및 적립	17
4. 공제가입자 관리	20
5. 지원금	30
6. 정부지원금 관리	33
7. 사후관리	42
8.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3
III. 시행일 및 경과규정	47
[별첨 및 서식]	54

1. 총 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mismatch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각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 제30조의1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의 설치)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 제30조의8(공제규정) △ 제30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용어 정의

-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3-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이하 “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 3-3. “실시기업”이란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3-4.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한다.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 3-5.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 3-6.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 3-7. “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이란 청년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청년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 3-8. “기업부담금”은 청년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 3-9.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이란 청년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 ‘청년지원금’은 청년 가상계좌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 ‘기업지원금’은 청년의 채용유지를 전제로 하여 기업 가상계좌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 시행 전반 총괄·조정

4-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과보상공제 간 연계·조정 등 업무 협의

4-3. 고용센터

- 사업 안내 및 홍보 및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
-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 청년공제 시행 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청년, 실시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청년,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공제부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공제 가입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4-4.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공제시스템 운영·관리
- 청년공제시스템과 청약시스템간 연계
- 청년공제 관련 통계 분석·관리

4-5.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협업기관 대상 청년공제 실무교육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 및 수요 발굴
- 청년·기업의 청년공제 청약가입 업무
- 청년(핵심인력) 및 기업 가상계좌 발급 업무
- 청년공제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적립·반환
- 청년공제 부금(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관리
- 청년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 청년공제 청약관리 시스템 운영, 청년공제 관련 통계 분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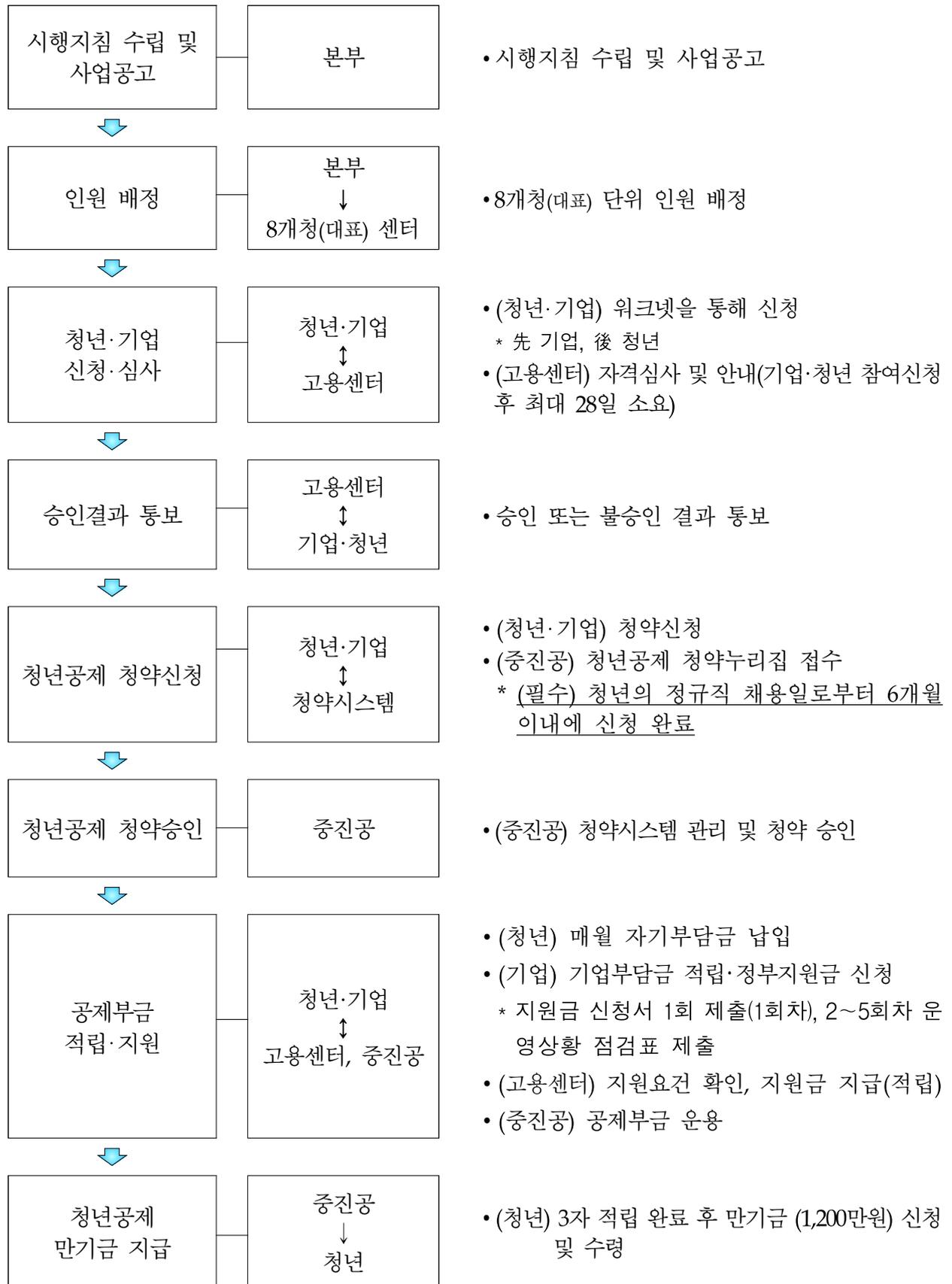
4-6. 실시기업

- 청년 고용 및 청년공제 가입의 주체
- 기업부담금 적립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및 장기고용 유지

4-7. 운영기관<민간위탁 기관>

- 2022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5.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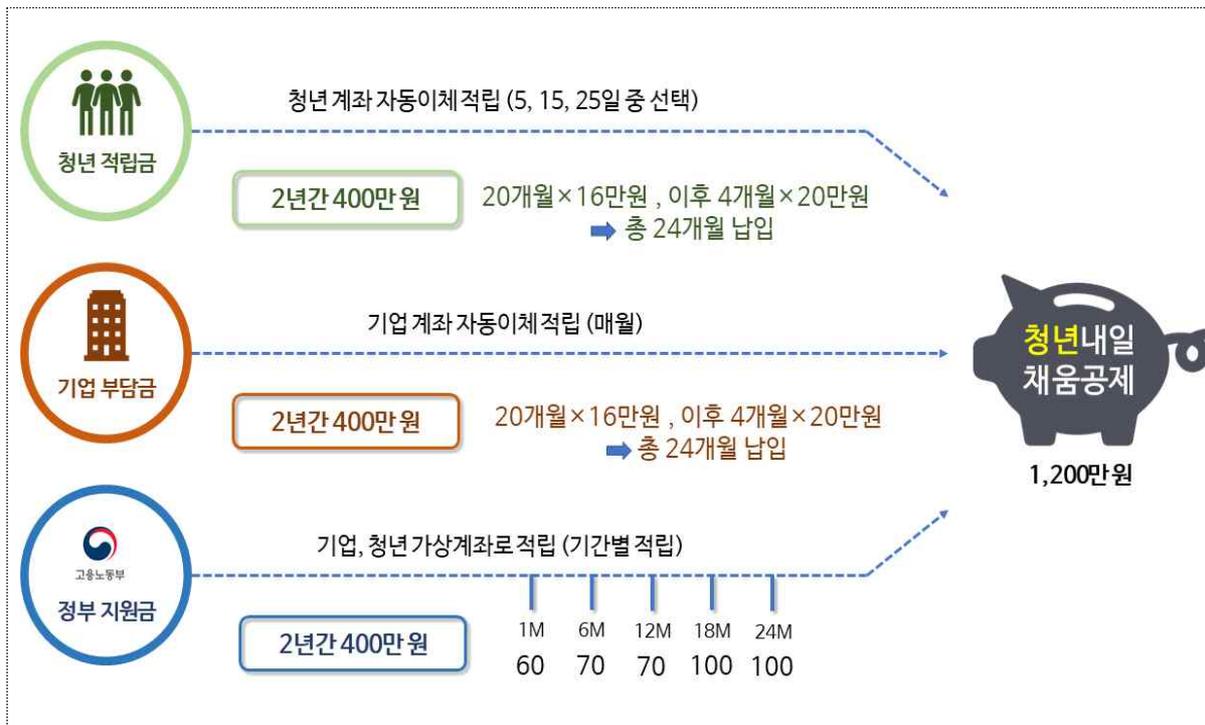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6-1.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6-2.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Ⅱ.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정규직 채용

- ❖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기준)상 근로계약기간 확인
-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 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

-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지침 「II.청년공제 가입. ④ 공제가입자 관리. 4. 재가입」 참고
-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 동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지침 기준 적용
 -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청년공제 가입 전 반환·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 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관련 내용 기재 필수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1-3. 예외적 가입 허용

-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수혜자
-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참 고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방식

- ❖ 정규직 채용일 '23. 1. 5. ▶▶ '22.12월, 11월, 10월 각 월말 피보험자수의 합 / 3개월
- ❖ 사업장 성립일부터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성립일부터 정규직 채용일 직전월까지 월말 피보험자수의 합 / 해당 개월 수
- ❖ 사업장 성립일부터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서 청년이 채용된 경우 ▶▶ 해당 월말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3년 이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 법 제2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매년 고용노동부 공고, 해당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참 고

⑤, ⑥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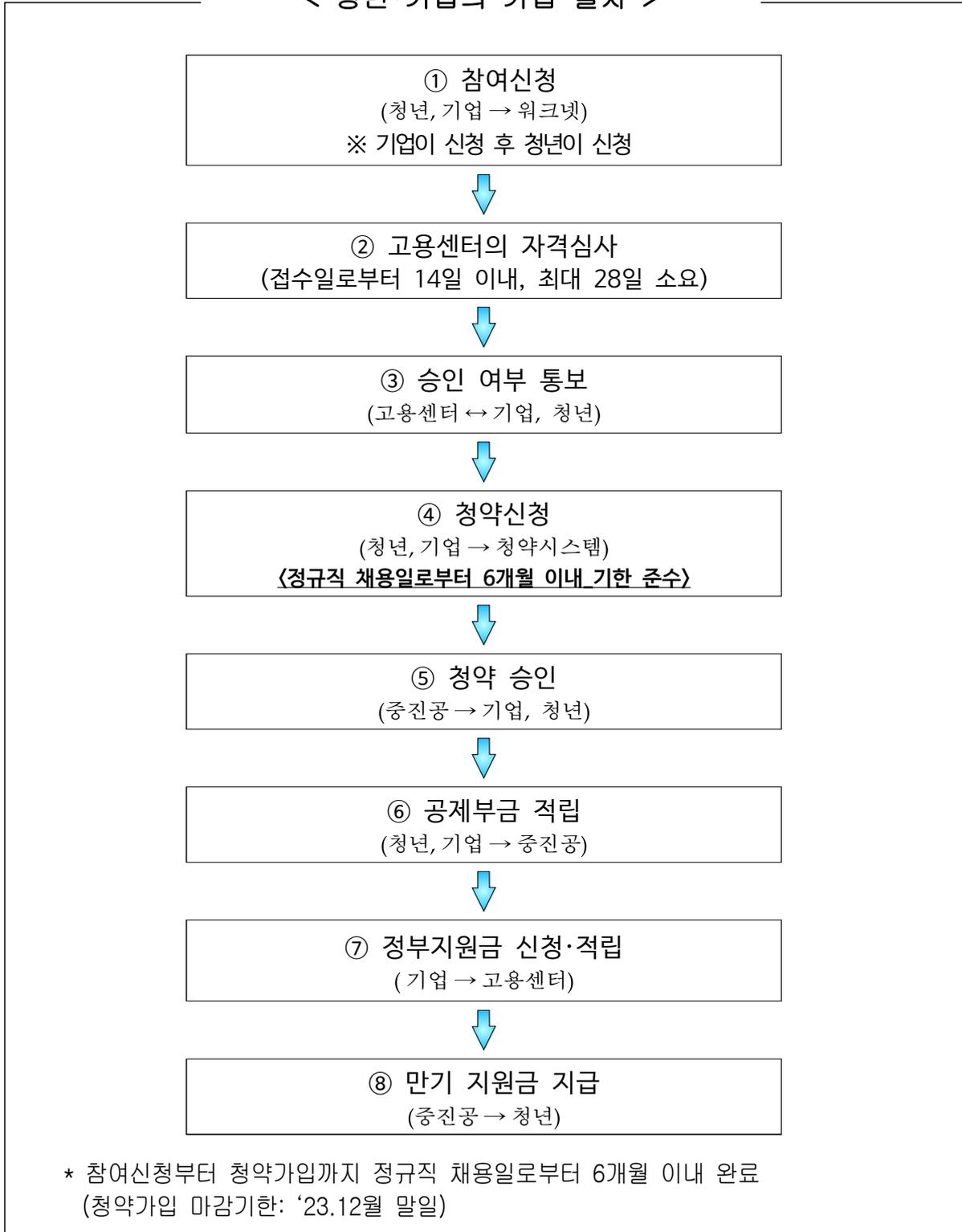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승인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 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2 청년공제 참여 신청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 절차 >



2. 워크넷 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2-1.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 청년공제 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2), 졸업(수료증명서)

-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2),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3), 근로계약서

-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 *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공제 가입신청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

- ** 기업 참여신청 후 청년은 기업 정보를 검색(워크넷에서 자동 검색)하여 신청 완료

-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 전송)

- * 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 ** 고용센터는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사업주)가 타 지방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관서로 이관

2-2. 신청 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승인-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미리 신청(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청)

- (‘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 ‘22.7.1.~‘22.10.31.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4.30.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 ‘23.4.30.까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 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2-3. 접수 및 심사

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가입요건 확인

구분	가입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서류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고용보험 시스템
	업종	-	
	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	근로계약서(필요시 임금대장 등)	서류
	가입 제외 요건	확인서	전산, 서류
청년	신규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수료 증명서	서류
	가입 제외 요건	확인서	전산, 서류

나. 고용센터는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청년 및 기업은 보완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또는 반려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청년이 보완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기업 및 청년은 별첨 확인서(서식1-1, 2-1)*를 각각 제출하여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 (확인서 내용) 기업·청년 참여 자격(제외 대상 등), 중복지원, 청년공제 참여이력 및 중도해지 사유, 재가입 시 지원금 반환여부 등 확인

2-4. 승인결과 통보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워크넷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기업 및 청년에게 참여자격 승인(또는 불승인) 통지서(서식4)를 발송하여야 함

* 불승인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고용센터는 참여신청이 승인되면 기한* 내 청약신청을 하도록 참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2-5. 승인 취소

가. 청년 및 기업은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단, 중진공 청약승인 이전으로 한함)

- 승인 취소는 청년 및 기업이 워크넷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청년 또는 기업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요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음

나.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이 참여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청년 및 기업에 안내한 후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2-6. 이의신청

가. 참여신청에 대하여 고용센터가 불승인 또는 직권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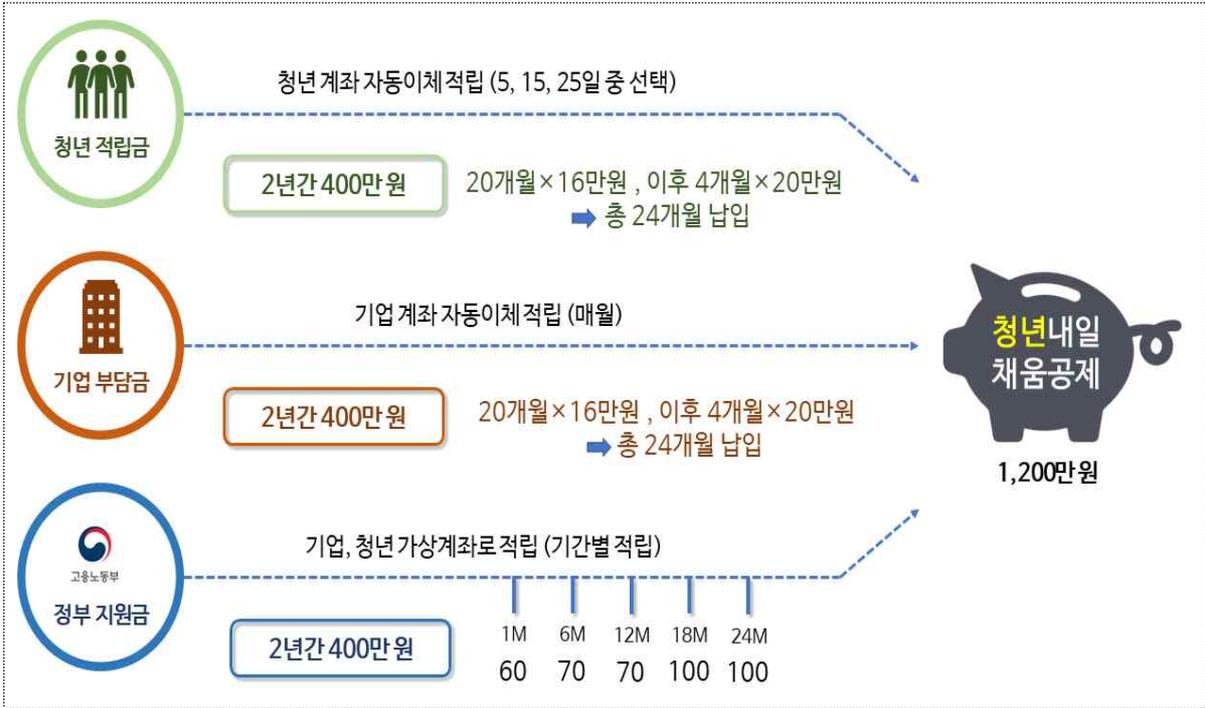
- * 단, 가입자(기업·청년)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고용센터에 명시적으로 직권 처리를 요청하거나 직권 처리에 동의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기업 및 청년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심판 또는 소송은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청구

3 청년공제 가입 및 적립

1. 청년공제 적립구조



2. 청년공제 청약신청 ⇒ www.sbcplan.or.kr 신청

2-1. 신청 대상

- 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참여 자격에 대해 승인 받은 기업·청년

* 위 『2』 청년공제 참여 > 2.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2-2.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신청 기한) 참여 승인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 (신청 방법) 신청기한 내에 실시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함

** ‘23년 참여승인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까지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3. 청약 승낙

- 가.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
- 나. 중진공은 청년공제 가입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
- 다.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핵심인력)

-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중진공은 청년공제 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청약 승낙(승낙일=승인일)
- 다.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
-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2. 기 업

-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다. 납입금액(기업부담금):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3-3. 정 부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총 4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부지원금	청년지원금 (누적금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총 누적액	6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다. 적립방법

○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2회차 이후부터는 운영상황 점검표로 지원금 신청을 대체함. 단, 고용센터는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청년지원금) 청년 가상계좌 적립, (기업지원금) 기업 가상계좌 적립

4 청년공제 가입자 관리

1.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납입중지

- **청약철회:**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계약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공제 계약 성립 후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
- **중도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 (계약취소와 중도해지)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에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처리
-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

1-1. 청약철회

-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약철회(가입자격 미달 또는 가입제외 대상)

1-2. 계약취소

- 청년공제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청년공제 계약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

1-3. 중도해지

- 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 청년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 계약자는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 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14. 납입중지

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공제 부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함

-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나. 납입중지 사유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 부금 납입을 중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은 운영상황 점검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15일 이상'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

다. 납입중지 기간: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 기간

-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유사 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필요시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심의)

◇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납입중지 기간

가. 해당 기간: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③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나. 최대 12개월까지: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다. 최대 24개월까지: 업무상 재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2개월, 단체협약에 따른 무(유)급 육아휴직 12개월 시 → 납입중지 기간 최대 24개월

2. 고용승계 시 공제계약자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대표자 변경, 영업양수·양도 등으로 공제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 가능
 - * 청년근로자의 단순이직 사유로 인한 계약승계(계약자 변경)는 불가
- 고용승계에 따른 공제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 간의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승계 가능
 - * 첨부서류 : 계약자변경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 및 합병 등에 관한 서류 사본 등)
 - *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 (기타사항) 관계사* 인사발령 등 고용승계에 따른 공제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승계 가능
 - * 관계사: ①회사간에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②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경우
 - ** 첨부서류: 인사발령문, 관계사 입증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등), 고용승계(기가입기업, 변경기업, 가입근로자) 등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증빙 받아 확인

공제계약자 변경 시 유의사항

- 청년근로자의 단순 이직시 기업간 합의에 의한 고용승계는 사업 및 공제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승계(계약자 변경)에서 제외
- 기업간 영업양수·양도 등에 의해 청년근로자의 근무지가 불가항력적으로 변경될 경우 한해 기업간 계약승계 요청 시 계약자 변경 가능
 - * 영업양수·양도 : 회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 받는 행위

3. 신청 및 처리

3.1. 신청 및 처리방식

가.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처리

- (원칙) 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청약철회·납입중지·계약취소 등을 신청하여야 함

- (유형별 신청 주체)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이 신청, 청약철회·납입중지·계약취소 시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에 의한 '청약철회'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내용을 첨부하여 청약누리집에 신청
- 중진공은 기업 또는 청년의 중도해지 등 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워크넷으로 전송)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

① 사유발생 → ② (청년 또는 기업) 중도해지 등 신청 → ③ (중진공) 신청 사실 검토 및 고용센터 통보 → ④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보류

나. 고용센터 직권 처리

- 고용센터는 청약철회, 중도해지,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함
-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등 신청방법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자(기업·청년)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청약철회, 중도해지 등을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 고용센터는 3개월 연속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등 직권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청년·기업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2주 원칙, 상황에 따라 최대 2주 추가 가능)을 부여하고, 청년의 공제부금을 납입 중지하며, 해당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됨을 통보
- *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에서 중진공으로 즉시 납입중지 요청 통보(사유 및 계약종료 예정일 기재)

① 사유발생 → ② (고용센터) 청년 및 기업에 신청 안내, 중진공 사유 통보 → ③ (청년 및 기업) 중도해지 등 신청 → ④ (신청인 미신청시) 고용센터 직권 처리 → ⑤ (중진공) 검토 및 처리

-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입자(기업·청년)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 * (행정절차법 적용)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가입자(기업·청년)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고용센터에 명시적으로 직권 처리를 요청하거나 직권 처리에 동의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음

3-2 청년공제 참여신청일 이후 기업 유형 등 변경 시 특례

가. 기업 유형 변경

- 청년의 청년공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소속 사업장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를 말함
- * 청년공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전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청년공제 참여 신청 승인 취소
- ** 기업 유형 변경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비영리기업 등 무관함

나. 처리방법

-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기업적립금(기업부담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계속 적립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기업 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한 회차까지 적립, 이후 정부지원금 적립 불가, 만기시 청년 및 실시기업의 적립금은 전액 인정
- * 기업의 유형 변경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표일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종료되는 시점
- 기업유형 변경을 사유로 청년이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기업 사유에 준하여 처리

**참 고****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기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단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이 성립일 이전인 경우 성립일의 다음날로 중도해지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 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미제출 포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청년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 청년 사유로 공제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하게 된 때	사망일, 재해 발생일

* 청년이 기업 유형 변경 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청년 사유에 해당

3. 환급금

가. 환급금 지급 사유: 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 된 때

나. 환급금 지급대상

- (계약취소 및 청약철회) 취소 및 철회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
- (중도해지)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결정

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 사유	기업 사유(폐업 도산 등)	청년	청년	청년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청년 사유	청년 개인 사유	청년	기업	청년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청년	청년	청년

라.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기준

- (원칙) 환급금 정산 기준일(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참조)까지 적립된 금액(이자액 포함) 이내에서 환급
 -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 비율)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 비율)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 지급
- *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 환수(단, 실시기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해당기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 *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청년 적립금은 청년,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게 환급(당사자의 중도해지 신청 필요)
- * 가입기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기업 사유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 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실제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회차 이후)							
청년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적립 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2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실제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회차 이후)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다.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사유(부정수급 제외)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하거나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 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중도해지 처리 관할 고용센터 납부고지서 발부)
 - 고용센터는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재가입 승인

4. 재가입

가. 기본 요건: '23년 청년공제 가입 요건에 적합한 기업* 및 청년

- * 5인~49인 이하 건설업·제조업 기업, 재가입 시 청년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23년 지침 적용)

나.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단,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 1회에 한함)

- ①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부정수급 제외)
- ②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다. 위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하더라도 재가입* 가능

- * 중도해지 기업과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가능

5. 실시 기업의 의무

가.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공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됨

다.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인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성과급·복지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함

-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5 지원금

1.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1-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핵심인력)

1-2. 지원조건

- 가.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 부담금(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완납)해야 함

1-3. 지원(적립) 금액

-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총 4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부지원금	청년지원금 (누적금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총 누적액	6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1회차 지원금)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청년지원금) 청년 가상계좌 적립, (기업지원금) 기업 가상계좌 적립

- (2회차~5회차 지원금) 기업은 적립주기별로 운영상황 점검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는 청년의 근속 사실, 기업의 고용보험료 납부,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후 지급처리

- * 기업은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서식6)를 제출(워크넷 등)하여야 하며, 기업이 제출한 운영상황 점검표는 지원금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업 또는 청년이 6개월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기업이 운영상황 점검표를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고 중도해지 됨
- * (예시)3.15. 청년공제 가입, 1회차 지원금 적립시기 4.15.(~10.14.까지 운영상황 점검표 제출), 2회차 지원금 적립시기 9.15.(~다음연도 3.14.일까지 운영상황 점검표 제출)

1-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가.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분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5) 및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 및 청년 확인서
 - * 워크넷에서 『기업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2회차~5회차는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서식6) 제출
 - * (확인내용) 청년 근속 여부, 고용보험료 납부 및 임금체불 여부, 납입중지 사유, 기업부담금 적립현황 확인
 -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 및 기업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임금지급내역 등 기업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1회차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보완 시 10일 연장)에 지급
 - 2회차부터는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및 전산 등을 확인 후 지급 처리
 - * (확인내용) 청년 근속 여부, 고용보험료 납부 및 임금체불 여부, 납입중지 사유, 청년 및 기업의 6개월 이상 부담금 납부 여부 등(필요시 자료 요청)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2. 지원금 지급 제한

2-1.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 중도해지

2-2. 임금체불에 따른 제한

- 적립기간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

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반환금 미납부 기업

- * 정부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반환금을 미납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

3. 공제금 만기 지급

-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3개 모두 적립
-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
 -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라. (만기 공제금 지급)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6 정부지원금 관리

1. 지원금 관리

1-1. 적용 규정

-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의 지원금 중 청년지원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기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리

* 세부적인 내용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적용

1-2. 관계서류의 보존

-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 부정수급 등 방지

2-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가상계좌 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2-2. 부정수급 판단기준

- 가. (실시기업) ① 청년공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 임금 등 근로조건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 나. (청년)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2-3. 부정행위 관련 조사

-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부정수급 인사이트” 포함)의 부정행위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나.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시 기업 및 청년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 만약,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참 고

<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관할 지방관서
- 다만, 관할 외 지방관서가 현장 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처분은 관할 지방관서)

▶ 예 외: 관할 지방관서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지방관서

2-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년을 청년공제에 가입 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가입을 금지함
- 나.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함
 -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처분 횟수 및 고의·과실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5배까지 추가징수

- (제재부가금)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자진신고)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음



참 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별표2]

구 분		지급제한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300만원 미만	3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	12개월

<「공공재정환수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 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 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이하 생략)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금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 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 지급금액
4. 법 제2조의 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200%

-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부 부정수급 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

3. 부당이득

3-1. 부당이득 개념

-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제도
 - * 지원금이 과다 또는 착오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기업지원금 또는 청년지원금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조치
 - 사업주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여야 함
- (기업지원금) '20.8.28.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3항,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 (청년지원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반환 조치

4. 반환금 환수절차

4-1. 의견청취

- 고용센터의 장은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에 따라 해당 기업 또는 청년의 의견을 청취

<참고> 처분절차

가. 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 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처분 시 의견청취는 청문실시, 공청회 개최, 의견제출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라고 함

2) 대상 처분(「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시정명령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계약해지 등)
 -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예시: 참여신청 반려, 청약 불승인 등)은 사전통지를 요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사자에게 권리·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님
- '시정명령'의 경우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후 처분을 하여야 하나,
 - 의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3)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4)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청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당사자 등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야 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5) 제출의견의 반영(「행정절차법」 제27조2)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6) 문서 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 문서송달은 직접 교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교부에 의한 송달 시에는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에 의한 송달'(제14조제4항) 또는 '유치송달'(제14조제2항)을 할 수 있음. 단, 부재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시송달은 최후 수단으로 이용

* 주소등: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함(제15조제3항)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2. 반환명령

○ 고용센터는 반환명령 대상 기업, 청년에 대해 반환명령 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반환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금액으로 함

* 추가징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정수금액의 2~5배까지 할 수 있음

4-3. 징수결정

- 지방관서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함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4-4.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이 가능

5. 반환금 환수 관리

- 고용센터는 실시기업 및 청년에 대한 부당·부정행위 조치 결과를 워크넷(실시기업 위반)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 조치에 따른 반환금의 환수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분기 1회)
-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 및 징수업무 담당자는 부정·부당행위의 조치 및 환수 현황이 변경될 경우 고용센터(청년공제 담당)에 통보하여야 함

* 부정수급 조사: 청(부정수급조사과), 지청(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 징수 및 환수: 청(고용관리과 또는 광역징수팀), 지청(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7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지도·점검

2-1. 고용센터의 현장 지도·점검

가. 고용센터는 관할 실시기업이 청년공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반기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점검표 서식9)

나. 실시기업 지도·점검

- (대상)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부정수급 인사이트 포함)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그 외 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
- (규모) 연간 청년공제 담당자 1인당 10개소 이상(‘23년 참여기업 대상)

2-2.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 고용센터는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실시기업 및 청년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고용센터는 실시기업 및 청년이 「고용보험법」, 「공공재정환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 및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4)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가·징수,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필요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지방관서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들의 재가입 기회 부여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지방관서의 장은 청·지청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선임 고용센터장(위원장)을 포함하여 고용·노동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 지방관서는 고용·노동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관리

- (운영)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개최
- (기능) 운영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①청약철회, ②재가입 기회 부여, ③위탁기관 관리 등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중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지방관서의 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을 적극 반영

* 운영위원회 결정은 해당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3. 시행시기 : '19. 10. 7. 이후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①청약철회, ②재가입 기회 부여, ③위탁기관 관리 등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중 개별 사안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서 내의 선임 고용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출석의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 개최
-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동일기업이 다수의 고용센터에 청년공제 가입(신청)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병합하여 개최하되, 병합 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선임 지방관서의 고용센터장이 되며, 이때 관련된 지방관서의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회의 개최는 해당민원 발생으로 안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센터가 총괄한다.

2. 내용 및 권한

-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청약철회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재가입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다. (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라.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심의 절차

-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별지 제10호서식)하고, 심의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관련 안건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4. 결과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가 결정된 이후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5. 심의 취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IV.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 지침은 '23. 2. 3.부터 시행하며, '23년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 다만, 아래 사항은 '23년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 ① 청년 1-2 가입제외자 '월 급여총액 기준'
 - ② 2-2. 가입 제외 기업 '부정행위시 제한기간'
 - 아래 사항은 '23년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되, 사유 발생일이 '23년 지침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① 재가입, 고용승계시 공제계약자 변경
 - ② 중도해지 사유, 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해지환급금 지급 비율
 - ③ 납입중지
 - ④ 2-2 가입 제외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지원 제한 규정'
- '23.11. 이전 가입 기업 및 청년에 대한 관리는 종전과 같이 운영기관이 담당한다.
 - ①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지원금 신청 및 안내
 - ② 지원금 요건 확인
 - ③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④ 가입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⑤ 근속유지 관리
 - ⑥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 ⑦ 기타 지원협약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중소기업 대표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나. 공제·보험·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① 중소기업진흥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진흥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0조의8(공제규정)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

별첨

<별첨 1>

청년공제 지원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 항목명	소분류 항목명	코드
제조업(10~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
	기타 식품 제조업	107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1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
	담배 제조업	120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
	편조 원단 제조업	13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
	봉제의복 제조업	141
	모피제품 제조업	142
	편조의복 제조업	143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1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
	나무제품 제조업	162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
	기록매체 복제업	182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
	화학성유 제조업	205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
	의약품 제조업	21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
	고무제품 제조업	22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41~42)	411	건물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6	건설장비 운영업

* 청년공제 가입 시 업종 확인: 고용보험시스템의 대분류 코드 2자리 기준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 실시기업 및 청년의 위반행위

-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고용보험법」, 「공공재정환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약관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 실시기업이 고용보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
 -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청약철회할 수 있음
 -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중도해지 또는 청약철회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지원금 부정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부정 가입 ○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 서류 허위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공공재정환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에 따른 부정수금액 환수 및 추가징수 등 조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기타 시행지침 등 위반 ○ 기타 고용센터의 지도·요구 비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주의 → (2차)경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식 목록

【별지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59
【별지 1-1】 확인서	60
【별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62
【별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63
【별지 2-1】 확인서	64
【별지 2-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6
【별지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67
【별지 3】 표준근로계약서	68
【별지 4】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결과 통보서	69
【별지 5】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70
【별지 6】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71
【별지 7】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결정 통지서	72
【별지 8】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73
【별지 9】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점검표	74
【별지 10】 운영위원회 검토서	77
【별지 11】 운영위원회 심의표	78
【별지 12】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79
【별지 1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설문	80

■ [별지 제1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이 메 일	@
	주 소			

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필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input type="checkbox"/> 휴학 <input type="checkbox"/> 졸업예정	<input type="checkbox"/> 재학

신청정보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본사기준)	
	사 업 장 명		취 업 일	
	월 급 여		정규직 취업일	

추 가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small>*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small>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 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정부 또는 지자체 자산형성(통장, 저축, 계좌 등) 사업 수혜 해당
<input type="checkbox"/>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2.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3.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또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	---

확 인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본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자	[] 예 [] 아니오
②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③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에 가입했던 자 ↳ (③-1 ‘예’ 답변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12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실시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예 [] 아니오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예 [] 아니오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가입 후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예 [] 아니오
⑦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자 * 급여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월평균 상여금 및 기타 고정 성과급 등도 모두 포함하여 초과 여부 판단	[] 예 [] 아니오
⑧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예 [] 아니오
⑨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관계인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 예 [] 아니오
⑩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근무했던 경우는 실직기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예 [] 아니오
⑪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등에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예 [] 아니오

<p>⑫ 정규직 취업일 기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중복참여한 자</p> <p>↳ (⑫-1 '예' 답변시)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지원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p> <p>*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이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는 가입 가능</p> <p>↳ (⑫-2 '예' 답변시)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p>	<p>[] 예 [] 아니오</p>
<p>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18년 이후 수령자 포함)</p> <p>*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p> <p>↳ (⑬-1 청년공제 가입 이후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중도해지됨을 확인함</p>	<p>[] 예 [] 아니오</p> <p>[] 예 [] 아니오</p>
<p>⑭ 청년공제 가입 예정인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초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의무복무 예정이거나 복무 중인 자</p> <p>↳ (⑬-1 '예' 답변시)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p>	<p>[] 예 [] 아니오</p> <p>[] 예 [] 아니오</p> <p>[] 예 [] 아니오</p>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사업자등록여부, 청약 관련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정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정보, 군복무 이력(대체복무 이력 포함)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준영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격여부 판단 출력 자료(5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9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위탁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타 기관(보건복지부, 병무청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된업종	고용보험자수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월말)		
전화	F A X		
담당자명	소속부서	휴대전화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수집동의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운영을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번호)의 수집에 동의함(해당 업무 담당 기간에 한함. 업무 담당자 변경 시 변경)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문자수신	청년공제 참여신청 결과, 운영상황 점검 등 휴대전화 문자 수신 희망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청년공제 가입 신청 인원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월 임금총액 (*300만원 초과자 지원 제외)
청년공제 가입 신청자 명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 정규직 채용(전환)자 근로계약서
------	--

확 인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기업” 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① 청년공제 신청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종의 기업 *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예 [] 아니오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 예 [] 아니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전년도('22.1.1.~'22.12.31.)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⑥-1.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승인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예 [] 아니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 중 제한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예 [] 아니오
⑨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제5호는 가능)	[] 예 [] 아니오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예 [] 아니오

<p>*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p>	
<p>⑪ 전년도('22.1.1.~' 22.12.3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p> <p>*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p>	<p>[] 에 [] 아니오</p>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기업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에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정보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23년 이전 1년('22.1.1.~'22.12.31.)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 기소 송치 등 이력
- 가입년도 이전 1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기간동안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노동관련 수사 이력
- 타 정부지원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혜 이력

◦ 수집·이용 목적 : 본인 확인 및 참여 적격·유지 요건,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확인

◦ 보유·이용 기간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 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영업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	연락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 번호		이메일	
	소재지			

승인 인원	명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채용일	승인결과	비고 (불승인 사유)
청년공제 가입신청 명단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위와 같이 귀사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년 월 일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관인

(주)00기업 대표이사 000 귀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사업년도	2023년
------	-------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 지원금 회차 기입 요령 (청년공제 청약승낙일 기준)			1회차(청약승낙일~1개월)/2회차(2~6개월)/ 3회차(7~12개월)/4회차(13~18개월)/5회차(19~24개월)			
청년(핵심인력) 성명	정규직 채용일	청년공제 개시일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부지원금 신청액		가상계좌번호
주민번호	지원금 회차			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	
				원	원	(청년)
000000-00000000						(기업)
				원	원	(청년)
						(기업)
계				원	원	

※ 청약승낙일(계약 성립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소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상황 점검표(0회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확인 내용은 지원금 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년공제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회차

대상 청년 성명	생년월일	청년공제 청약승낙일 (공제계약 성립일)
	000000-*****	

① 청년공제 참여 청년이 (지원금 신청 대상기간)00.00.00부터 00.00.00까지 (기업명)에서 재직 중이다.	[] 에 [] 아니오
②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청년공제 참여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의 일부라도 체불하지 않았다	[] 에 [] 아니오
③ 청년공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15일 이상 일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 있다(무노동 무임금) ↳ ‘에’에 표기한 경우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www.sbcplan.or.kr)’에서 납입중지 신청을 하여야 함	[] 에 [] 아니오

당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회차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 내용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 에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0)회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명	원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지급 결정 내용			
<input type="checkbox"/> (0)회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명	원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피보험자수			업종		
청년공제 참여현황	구분		청년공제 가입인원	중도해지자	
	'17년 이전	취업인턴			
		취성패	I 유형		
			II 유형		
		일학습병행			
		고용센터 알선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18년 이후				
환수내역					

조사결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 필요시 별지 기재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지방고용노동(지)청

직급(직책) :

성명 :

(인)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가입자격 적정 여부	
2. 청년의 가입자격 적정 여부	
3. 중도해지자 관리	
4. 청년공제 가입자 근속 및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5. 지원금 신청 적정성	
6. 서류보존 상태	
7.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위반 여부	
8.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

기관명 :

○○지방고용노동(지)청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운영위원회 심의표

심의 건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여부 심사		
대상자명 (기업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의결 사항	(예시) 가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심의 의결
-------	--------------------------

심 의 내 용	심의 위원 평가 의견	
○ 심의안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현황, 관련 근거,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기권 또는 제척 여부	사유: 해당 없음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심의건명 : (예시) 신청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심의 의결

위원명	수용	불수용	제척여부	기권여부	위원 서명
홍길동	○		-	-	홍길동
나대한		○	-	-	나대한
김민국	○		-	-	김민국
합 계	2	1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최종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 기타사항					

집계자	성명	서명	확인자	성명	서명
-----	----	----	-----	----	----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업이나 귀하가 일하는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 (이미지)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구 분	사업 참여 전					사업 참여 후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그저 그렇다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그저 그렇다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근무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근속유지, 근로의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 됨	조금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귀하의 근속유지와 기술력 향상에 대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동기부여 및 근로의욕에 대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입사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여부가 회사 선택 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 됨	조금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여부와 회사 선택시 기여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서술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답자 일반 사항)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성 별 남자 여자
- 연 령 만 세
- 학 력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시, 도 ()군, 구
- 기업 규모 5명~9명 10명~19명 20명~29명
- (근로자수 기준) 30명~39명 40명~49명

기업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최초로 인지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고용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 구직자 및 입사자(입사예정)들이 가입을 희망하여
-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 매체
- 인터넷 검색(SNS, 보도자료 등)
- 기타 ()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도입 이유 및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 및 기술능력 향상
- 기업 인력난 해소
- 청년 채용에 유리해서
-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 기타 ()

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것이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 및 청년 채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 됨	조금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신규고용촉진 및 청년 모집·채용	①	②	③	④	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청년의 장기근속 등 고용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 됨	조금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청년의 고용유지	①	②	③	④	⑤

